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7. 16.(월)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 위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8-36-39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명은 씨씨에스충북방송으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2018년 5월 24일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2018년 6월 25일에서 26일까지 방통위는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는 SO 방송평가 만점이 ‘16년부터 5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해서 추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점수를 상회하였으나 방통위 상임위원이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른 집중 심사 필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전동의 심사 평가점수는 621.17점으로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항목별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전동의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 중 재허가 거부 입장은 최대주주의 공적책무 이행의지 부족, 지난 재허가 당시 부가된 경영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및 관련 문제의 지속, 지역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의 문제점을 보았을 때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심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중 조건부 재허가 입장 소수의견은 지역채널 유지와 시청자 보호 필요성, 소액주주 보호, 직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를 하되, 경영투명성 관련 소유와 경영을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재허가 조건 안에 특수관계자 및 대주주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선임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사전동의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입니다. 먼저 최다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총점 60점 중 21점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인 최다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충북방송은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최다주주 등 경영진의 경영투명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액주주의 검찰고발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 협력업체인 디앤씨씨에 공사대금 및 유지보수료를 과다 지급해 온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북방송은 '17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고, 외부감사인은 (주)디앤씨씨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주주들은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맡아 충북방송을 경영한 바 있고, 현재 주요주주들은 횡령·배임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주요주주 중 1인은 충북방송의 주가 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7월 기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다음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 항목에서 25점 중에서 7.5점을 얻었습니다.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 내부 회계관리 문제로 2017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충북방송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충북방송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최대주주 측의 배임·횡령 혐의가 공시되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 과정에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다음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항목에서 30점 중 9점을 얻었습니다. 2012년 재허가 심사, 2015년 사전동의 심사 시에도 재무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고, 재작성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과다 지급된 용역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약 5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채널의 운영실적 및 계획 항목에서 45점 중에서 25.88점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채널 투자를 위한 제작비가 2016년 11억원, 2017년 12.4억원으로 2015년 13.5억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향후 투자계획 또한 2018년에서 2022년 평균 1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지역채널 투자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지역채널 뉴스편성이 2015년, 2016년 1일 2회 제작하던 것에서 2017년 1일 1회 제작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보도 책임수행이 취약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가 또는 승인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항목에서 40점 중에서 14점을 얻었습니다. 2012년 재허가, 2015년 사전동의 심사 당시에도 경영투명성, 재무 건전성 등이 문제가 되어서 경영투명성 제고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이번 사전동의 심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5년도 부채비율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행권고를 받았으나 2017년도 부채비율 계획을 기한 내에 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과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전동의 심사 결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는 충북방송에 사전동의의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심사위원 다수는 상기 검토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북방송은 2012년 재허가 심사, 2015년 사전동의 심사에 이어 이번 사전동의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재차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등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전동의 심사에서도 최다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허가 또는 승인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4개 항목에서 만점 대비 4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재허가 당시 충북방송이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이사·감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경영투명성 제고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한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의견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부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하여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 향후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동의 의견 불수용 시에는 재요청이 가능하며, 수용 시에는 청문 등 재허가 거부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사안은 방송사의 재허가를 거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고 그동안 또 심사숙고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본격적으로 사전동의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심사의 경과 및 결과, 그리고 합의를 간략히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보고받은 것처럼 씨씨에스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결과,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약식으로 심사하지 않고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 사전동의 본 심사위원회는 사전동의 제도의 취지와 방송법상의 재허가 기준 그리고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0점 만점 중 621.17점을 획득해서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검토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간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사전동의 여부를 두고 의사에 합의를 이루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의견을 거부하자는 다수 입장과 강력한 조건을 부가해서 재허가에 동의하자는 소수입장이 전체위원의 25%로 나뉘었습니다. 조건부 재허가 입장은 재허가 거부 시에 지역채널 시청이 불가능한 점 등 시청자 피해가 있고 소액주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 직원 일자리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하되 특수관계자와 최대주주,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충북방송에 문제가 많지만 현실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강력한 조건 부가를 통해 재허가를 해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수의 재허가 거부 입장은 첫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현 경영진이 방송의 공적인 책무 이행의지가 현저히 부족하고, 둘째로 지난 재허가 당시에 부가된 경영투명성 조건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뉴스 편성을 비롯하여 제작비 감소 등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실적은 감소하고 향후 계획은 미흡한데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특수관계인에게 56억여원을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와 소액주주들에게 기여하겠다는 공적인 책무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충북방송의 특수관계인인 (주)디앤씨씨의 하도급 공사 대금 및 유지보수료를 과다 지급해서 2017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3일 충북방송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발로 인해 7월 6일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측이 배임·횡령 혐의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고,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에 대한 사전동의 제도가 규정된 취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홀해질 수 있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 공적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총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한 결과, 그리고 사무처에서 올린 안전대로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선 이 충북방송의 이 사업자, 말하자면 경영진 쪽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재허가 심사에서도 다 620점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65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저희들에게 넘기면서 사전동의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 심사한 점수가 나와 있지만 그 사이 재허가 조건, 그리고 사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40점 만점에 14점 정도로 완전히 과락 상태로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경영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이 모두 과락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전동의를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이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지난번에 재허가를 받으면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영혁신위원도 전원 사퇴하고 또 새롭게 구성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경영혁신위원들이 사퇴한 이유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작년에 기사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국체스게임이라는 곳에서 충북방송을 인수할 것이다, 그리고 VR 영화 콘텐츠 제공사업을 다른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같이 하겠다고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사이 이런저런 경로로 확인해 보면 이것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스게임에서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약만 해 놓고 극히 적은 지분에 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대로 이행이 다 됐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지금 계약을 작년 12월에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이 최대주주 지분 중에서 6.2%를 계약금 10억원을 당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70억원은 올해 11월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70억원

잔금을 지불해야 주식을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는 조건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조건을 가진 계약만 해 두고 아직 충실히 이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런 식으로 하고, 또 VR 영화 콘텐츠 제공사업을 하겠다, 작년에 이렇게 내놓은 것은 결국 주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다주주 뿐만 아니라 경영진 전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명확하게 해야 하고 충북방송 사례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가지 SO 사업자들 중에도 부실한 곳들이 있다면 면밀하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허 옥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님들이 사전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거부의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본 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여전히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특히 네 분 중 두 분이 재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부의를 오히려 더 가담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올린 원안대로 재허가를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제가 찬성을 합니다. 점수를 보니까 아까 표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최다주주 경영진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100점 만점 비율로 하면 35점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도 경영투명성, 또 재무적 안정성, 허가 승인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전부 100점 만점에 30점대 점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대주주의 공적책무 이행의지 부족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항목에서 과락입니다. 100점 만점 중 30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계속 재허가해 주어야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무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액주주에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소액주주가 70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7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굉장히 많습니다. 4분의 3 정도가 소액주주들인데 소액주주 피해가 나는 것을 우려해서 재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조차도 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이번 달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매매 거래까지 정리된 상태이고, 그것뿐이 아니지요.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55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무제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이러면 계속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감안해서 재허가를 조건부로 해 준다 하더라도 이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허가를 고려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기정통부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 과기정통부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해서 부처 간 협력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의 피해 문제, 어쨌든 지역 SO인데 지역방송사가 하나 문을 닫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에 대한 지역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사전동의 심사 평가점수를 보면 최소한 650점을 얻어야 되는데 621.17점으로 다른 심사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낮은 점수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사항과 평가점수를 보면 대부분 배점의 30%에서 40% 정도를 얻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허가에 반대하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심사 총평에 나와 있는 재허가 반대의견입니다. '이 사업자는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 경영투명성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이 낮고, 지역방송의 책무인 지역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최다주주의 문제, 경영진들의 문제, 경영투명성의 문제, 재무와 기술적 문제, 재허가 조건 불이행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떤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서 이러한 심사결과, 심사의견을 배척할 만한 어떤 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사전동의에 대해서 재허가 불허하는 쪽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심사 결과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그랬지요, 2015년 그랬지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과거 '12년까지는 통합 방통위원회에서 했고, '15년에는 미래부였는데 우리가 미래부 시절부터 사전동의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과기정통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일상적인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과기정통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미흡사항이 있을 때는 이행권고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고 이행권고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15년 당시 미래부가 조건부 재허가했으니까 조건을 붙였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전동의 하면서 그때 제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심사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는 불허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다수가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 주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조건부 재허가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면 '15년에 미래부나 방통위가 부과했던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대여금 회수나 부채비율 감소계획 같은 경우 기한 내 조건을 미이행하였고, 최대액출자자에 대한 대여금지나 경영혁신계획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이는데 조건 부가의 취지인 경영투명성 제고나 재무건전성 확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맞습니다. 기한 내 이행하라고 부가한 재허가 조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초기에 보통 3개월 이내 내지는 1년 이내에 이행하라는 구체적인 이행계획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기한 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서 경영조건을 개선하여 다음번 재허가 심사 때는 좋은 점수를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15년에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심사에서 부가했던 조건들을 보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허가 심사기간이 도래되니까 그제서야 충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허가를 하는 취지를 달성 못 했다,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그렇고 저도 과연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해줬을 때, 또 그 조건부 재허가에 사전동의를 해 줬을 때 과연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올라온 대로 재허가 불허하는 것으로 사전동의를 낸다에 저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로 사전동의라면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과기정통부가 심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650점 이상을 보내 왔는데 저희들이 뒤에 사전동의 관련 심사를 하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동의라는 것 자체가 모양이 합리적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사전동의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넘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법률자문관님, 혹시 사전동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지금 허가나 재허가 시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전동의 절차나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취지를 보면 허가 처분의 주체는 아무튼 과기정통부 장관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사전동의는 유관기관의 절차적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우리가 재허가를 거부하는 데 따른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든지, 직원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든지,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 곽영환 법률자문관

-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법적인 소송적인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됐든 저희가 거부 처분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소송도 예상됩니다. 지금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2016년도에 서대구 방송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심사기준에 대한 규범력을 인정한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미리 정한 기준, 이와 같이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재허가 거부처분을 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자체가 비례원칙에 부합하고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또 기준에 따른 심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는 없고, 그리고 기준에 따라 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처분사유의 문제이고, 처분사유가 사실관계에 들어맞아야 되고 올바르게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제대로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현 단계까지만 보면 위법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물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질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결과와 저희 점수가 불일치하고 있고 결과가 달라졌다는 부분은 향후 다투어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의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의 전문성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사위원 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통위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사안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였습니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가입자 문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직원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자들도 결국은 피해는 가겠지만 소액투자자라서 무조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허가가 불허될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기존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점들을 고려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즉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보다는 위험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익이 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회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들은 결국 주식거래를 통해서 위험과 수익을 모두 다 감내하는 그러한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총평에 나왔듯이 지역가입자 문제도 주요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집중 논의된 사안들이 그 문제였는데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은 아날로그 가입자가 저가 상품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지역 내에 있어서 재허가가 거부될 경우에 IPTV나 스카이라이프가 있긴 있지만 유료 방송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금액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숫자를 살펴보니가 가장 적은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1,340가구였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시 추후 별도의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이 재허가 혹은 재승인이 취소될 경우에 1년간 유지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고 곧바로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들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일자리 문제도 신규 채널이 허가가 될 경우에 고용승계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송의 1년 연장 유지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자를 보다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지역시청자들 그리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가 명분이 되어서 조건부 재허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심사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충북방송이 해 온 행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7분 폐회 】